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업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정경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954
----------	-------

발의연월일 : 2023. 12. 18.

발 의 자 : 정경희 · 이인선 · 김성원
정우택 · 태영호 · 조명희
이채익 · 이현승 · 박성민
권명호 · 조수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정신 등의 피해를 야기하는 무수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출산율의 극심한 감소, 인구 고령화, 소득 불평등 심화 등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극단적 선택 등의 불행한 결과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는 노령층 증가, 청년 실업의 증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자녀교육의 어려움, 교육·문화생활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의 인구감소 등 사회구조적 문제 역시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를 위기에 빠뜨리는 위험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사회보장과 관련된 법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소득 기준, 위기 상황 파악

여부 등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하고 있어,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명시적인 위기 상황을 입증하지 못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신(新)취약계층의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더불어, 각 부처 소관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범위가 대부분 노인·장애인·아동 등 전통적 취약계층에 국한되어 있고,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정책 역시 각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체계적 관리 및 촘촘한 보호·지원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상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 협업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함.

이에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업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취약계층 보호·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이를 실행할 기구의 설치,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총괄·조정 권한 부여, 기관 간 협업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취약계층을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및 기타 조건으로 인하여 사회

참여의 기회가 제한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혜택을 제공받을 기회를로부터 배제되기 쉬운 계층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가 행하는 취약계층 보호·지원 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권한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부여함(안 제6조).

다. 취약계층 보호·지원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지원 전략회의를 두고, 그 의장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함(안 제7조).

라.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취약계층 보호·지원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취약계층 보호·지원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보호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함(안 제10조).

바. 취약계층 보호·지원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기능을 연계하고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기관 간 협업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교육기관, 그 밖의 연구기관·단체 간 연계할 수 있는 협력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취약계층 행정데이터의 원활한 분석·활용 등을 위하여 취약계층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4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업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취약계층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이를 위한 행정기관 간 협업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사회 및 문화 분야의 발전과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이란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및 기타 조건으로 인하여 사회참여의 기회가 제한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혜택을 제공받을 기회로부터 배제되기 쉬운 계층을 말한다.
2. “취약계층 보호·지원정책”이란 교육, 보건·안전, 고용·근로, 복지·문화, 환경·주거, 존엄·평등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여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취약계층 보호·지원 및 행정기관 간 협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정신 등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

호하며 인간다운 삶 유지·증진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취약계층 보호·지원정책을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취약계층 보호·지원 업무의 총괄·조정)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가가 행하는 취약계층 보호·지원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제7조(취약계층지원 전략회의) ① 취약계층 보호·지원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취약계층지원 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전략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취약계층 보호·지원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2. 제10조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기본계획
3.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현안 및 업무 조정 등 협업에 관한 사항
4.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취약계층 보호·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전략회의의 의장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되고, 구성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이 된다.

④ 전략회의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차관보가 된다.

⑤ 전략회의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전략회의의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략회의에 분야별로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전략회의 및 분과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전담기구의 설치) 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취약계층 보호·지원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취약계층 보호·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취약계층 보호·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취약계층 보호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취약계층 보호·지원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약계층 현황
2. 취약계층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취약계층 보호·지원에 관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취약계층 보호·지원에 관한 교육·홍보 및 민간협력의 증진
5.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6. 그 밖에 취약계층 보호·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취약계층 보호·지원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기관 간 협업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함에 있어 상호 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기관 간 협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의 참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력망 구축) 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정보 등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교육기관, 그 밖의 연구기관·단체 간 연계할 수 있는 협력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력망의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취약계층 데이터 분석 등 지원) 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보호·지원정책과 관련된 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의 분석 등을 통하여 전략회의의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계층 보호·지원정책 관련 주요 현안 해결 및 국정과제 추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데이터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취약계층 지원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2. 여러 기관 간 데이터 분석 등의 협업이 필요하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 수립 및 의사 결정에 있어서 데이터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취약계층 지원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②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데이터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통계법」에 따른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데이터
3. 「사회보장기본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4. 그 밖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 제24조 또는 제31조를 각각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데이터 처리 등에 관하여서는 이 법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통계법」,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다.

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하거나 역량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취약계층 데이터분석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